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14,175,823	18,425,275
일반회계		538,021,558	16,140,647
특별회계		76,154,265	2,284,628
공기업특별회계		67,780,600	2,033,41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871,383	596,14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094,619	1,142,839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814,598	294,438
	기타특별회계	8,373,665	251,210
	강릉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519,165	15,575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47,600	13,428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2,658,353	79,751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50,751	91,523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390,750	11,723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1,299,500	38,985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특별회계	7,546	226

제 2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1년도 계속비이월사업조서는 별첨 "계속사업 이월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014,872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11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9,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이용승인 얻은 것으로 본다.

제 8 조 (간주처리) 회계년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